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직권-00001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1. ○○○○학교 학생 ○○○, 2. 학생 ○○○,
3. 학생 ○○○, 4. 학생 ○○○
피 조 사 자 ○○○○학교 교사 ○○○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피해 학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는 등 여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나. 피해 학생들이 ○○○○학교 ○학년부터 피조사자에게 가졌을 두

려움, 공포 등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교육전문가, 아동 발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피조사자가 학교관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학교관리자로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폭력 피해를 관리하지 못한 학교관리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피해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 2021. 3. 31.(수) ○○○○학교가 사안보고하였고, 같은 해, 4. 9.(금)~4. 15(목) 기간 동안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자 면담조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 기초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2018년 ~ 2021년경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체벌과 폭언을 하여, 피해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피해 학생이 다수이고, 오랜 시간 피해가 지속되어 심각한 상황이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사건 요지

- 1) 피조사자는 2021. 3.경 ○○시간에 피해자 1.의 배를 때렸다.
- 2) 피조사자는 2018년경 피해자 2.에게 수시로 체벌과 폭언을 하고, 2021. 3. 경에는 피해자 2.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다.
- 3) 피조사자는 2018년~2019년경 피해자 3.에게 체벌과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폭언을 하였다.
- 4) 2021년경 피해자 4.에게 폭언을 하였다.

3. 직권 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 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21. 3. 31.(수) 학교폭력 사안보고 접수
- 2021. 4. 9.(금) 면담조사(학교 관리자, ○-○ 담임교사, 피조사자)
- 2021. 4. 15.(목) 기초조사 보고와 직권조사 계획 수립 통보
- 2021. 4. 28.(수) 피조사자 면담(문답) 조사 실시
- 2021. 5. 4.(화) ○-○, ○-○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시
- 2021. 5. 20.(목), 5. 28.(수). 피해학생 대상 개별상담 프로그램 실시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와 참고인 주장

가. 피해자와 학부모의 주장

1) 피해자 1. 피해주장

2021년 3월경 ○○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배를 때렸다. 2021년 4월 3일 학부모(母)에게 전화하여 사건 취하를 종용하였다.

2) 피해자 2. 피해 주장

2018년경 남자라는 이유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렸다. 2018년경 급식시간에 밥을 빨리 먹었다고 장애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때렸다.

2018년경 아침시간에 인사를 안 했다고 발로 배를 차고, 가위 손잡이로 머리를 때렸다.

2018년경 운동장에서 체육할 때 운동장 3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돌지 않았다고 야구부 철창 쪽 구석으로 데려가서 때렸다.

2018년경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거나 넘어졌다고 말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했다.

2021. 3. 26.(금) ○○시간에 강당 배드민턴 라켓이 있는 구석으로 데려가서 마이크 끄고 ○학년 때 일을 얘기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면 죽인다고 말했다.

3) 피해자 3. 피해 주장

2019년경 자주 몸을 안고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신고한다고 말하니, ○-○반 옆 신발 터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뒷목을 잡고 얼굴을 세계 때리고 벽돌에 머리를 밀고 때리고 해서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울면 한 대씩 때린다고 해서 울지 않았다.

4) 피해자 4. 피해 주장

2021. 3. 26.(금) ○○시간에 팀을 구성하면서 ○○이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 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고 본인을 강당 구석(배드민턴 라켓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이크 끄고 한 번만 더 예의없게 행동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나. 피조사자의 주장

1) 피해자 1. 관련

피해자 1.을 올해 3월에 때린 적이 없으며, 신체접촉도 없었다. 피해자 1.이 울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피해자 2. 관련

피해자 2.를 체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2.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3. 관련

피해자 3.에게 신체접촉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4. 관련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등의 주장

1) ○○○ (○-○ 담임교사, 이하 '참고인') 주장

3월 23일(화) 피해자 1.이 피조사자에게 배를 맞았다고 참고인에게 이야기 했다.

피해자 1.은 피조사자에게 대들고 말 대답한 부분은 사과를 하겠는

데, 피조사자도 (배를 때린 것은) 사과를 해주셨으면 해서, 참고인이 피조사자와 이야기 한 후, 피해자 1.이 피조사자에게 사과하러 갔다.

피해자 1.이 사과하러 갔는데 피조사자가 되레 뭐라고 하니까 울었다.

참고인이 피조사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수업에 보내지 마라. 난 애 (피해자 1.)를 보내도 수업 안 해주겠다. 지금 기분이 뻑찼으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 어쨌든 수업을 보내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3월 26일(금) 4교시경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반 학생들이 떠들어서, ○-○반의 4명의 친구들(○○○, ○○○, ○○○, ○○○)을 ○-○반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조사자의 ○○수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고, 피해자 2.와 피해자 3.이 ○학년 때 피조사자에게 맞았다며 울었다.

당시 ○-○반 학생들을 전담수업에 보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반 학생들이 다시 올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고,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했다. 청소시간에 ○-○ 담임 교사와 이야기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방과 후에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전담 교실이 ○학년 교실과 붙어있는데, 3. 30.경(가피해자 분리 조치 이후에) ○-○반 친구(○○○ 학생 등)들이 하교할 때 피조사자가 복도에 서서 손가락으로 (학생들을) 오라고 했는데, ○-○ 학생들이 피조사자가 무서워서 우르르 도망갔다고 말했다.

학교관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로 피조사자의 자리를 ○○○ 안 교실로 옮겼는데, (○학년 교실 옆에 있는) 전담교실로 오고 있다.

피조사자가 지난 주말에 피해자 1.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1.을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받고, 녹음을 하고 있다.

2) 학교장 주장

2018년에는 이번 사안의 내용(피조사자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위)을 인지할 만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민원 접수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해서(피조사자의 학대 행위 등) 인지된 사항은 없다.

2019년경 피조사자의 수업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동 학대를 의심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2018년에 교장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학년인 피해 학생 3명이 왔다는 것은 기억에 없다. 2021. 3. 26. 오후경 ○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피해자 1.과 다른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

2021. 3. 30. 15시~16시경 전담교실에 가서 피조사자에게 가피해자 분리 조치에 대해 말했고, 조치 내용은 피조사자를 ○○실에 있도록 하였다가, 후에 학생들이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피조사자가 현재도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저와 교무 선생님이 피조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전달하고 있다.

피조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 불이행에 대해 관리자로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3) 교감 주장

피조사자가 2018년에 학교에 처음 부임한 상태여서 자신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반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2021. 3. 26.(금) 오후, ○학년 ○반 담임 교사가 이번 민원에 대해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으며, 민원 인지 후 2021. 3. 29.(월) 오전, 학생들과 대화를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은 그대로 있는데 학생들만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아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21. 3. 30.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간 분리조치를 교장 선생님이 피조사자에게 전달했으나, 4. 9.(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일), 12일(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일)에 피조사자가 전담교실에 있어 분리 조치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다시 안내했다.

피조사자는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항상 “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4) 교무부장 주장

2018년 ○○○○업무와 ○-○반 담임을 맡았고, 피조사자는 ○-○반 담임을 맡았다.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피조사자에 대해 학생들에게서 “선생님이 남녀 차별한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폭력을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아마도 학생들이 협박을 당해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 1) 2021. 3. 23.(화) 참고인 1.이 피해자 1.의 피해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확인하였다.
- 2) 2021. 3. 23.(화) 피해자 1.이 피조사자에게 사과하러 갔다.
- 3) 2021. 3.경 체육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을 강당 구석으로 데려갔다.
- 4) 2021. 3. 26.(금) 참고인 1.이 피해학생들 면담 이후, ○학년 ○반 담임교사와 함께 교감, 교장에게 피조사자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교장이 피조사자를 교장실로 불러 이야기 하였다.
- 5) 2021. 3. 29.(월) 교감, 피해학생들과 면담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하였다.
- 6) 2021. 3. 30.(화) 교장, 피조사자에게 피조사자와 피해학생간의 분리조치 실시 안내(30일 ○○○로 이동조치, 31일 ○○○으로 이동조치)
- 7) 2021. 4. 3.(토)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1.이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이날부터 피조사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
- 8) 2021. 4. 9.(금), 4. 12.(월) 학교관리자가 피조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위반 사실 확인하고 조치 이행 지시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1. 관련

2021. 3.경 체육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배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 피조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1.이 울지 않았고, 피조

사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 녹취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 3)과 같이, 피조사자는 피해자 1.을 강당 구석으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조사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7쪽은 ○○○ 학생이 “그때 ○○하다가 뭐냐, ○○○가 다쳤는데, ○○○ 때문에 다친 거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 불렀는데 그냥 말로만 혼내고 그냥 개는 울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말로만 선생님이 혼냈어요.”라고 하였다.

피조사자의 진술과 위 녹취록을 비교하면, 피조사자는 피해자 1.이 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은 피해자 1.이 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조사자의 진술과 피조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서로 상반된다. 또한, 참고인도 피해자 1.이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1.이 참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부분은 피조사자에게 사과할 테니 피조사자도 피해자 1.에게 배를 때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후 사과하러 피조사자를 찾아간 점으로 볼 때, 피해자 1.이 피조사자에게 불편한 감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피조사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해, 피조사자가 위 인정사실 7)과 같이 피해자 1.의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탄원 및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배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2) 피해자 2. 관련

2021. 3. 26.(금) ○○시간에 피조사자가 피해자 2.를 강당 배드민턴 라켓이 있는 구석으로 데려가서 마이크 끄고 ○학년 때 일을 얘기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하면 죽인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조사자는 피해자 2.만 강당 구석으로 데리고 간 적도 없고, 수업 중 학생을 따로 부르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강당 구석으로 데리고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배드민턴 라켓을 두는 공간 근처에서 피해자 1.을 한 번 부른 적이 있기는 하고, 다른 학생은 이 공간 근처에서 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 2.가 주장하는 2018년경의 피해사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면서 때린 적이 없고, 체벌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2.는 2021. 3. 26.(금) 4교시경 참고인과 학생들과의 우발적인 면담과정에서 1차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21. 3. 29.(월) 교감과의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2.의 학부모가 피해자 2.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3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3차 피해 진술을 학부모가 자필 기록하였다.)

피해자 2.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진술을 살펴보면, 피조사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며, 이에 더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진행한 피해회복을 위한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에서도 피해자 2.는 피조사자의 체벌과 위협 등 폭력 행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폭력행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피해자 2.에게 체벌 등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

과 협박 발언을 하여 피해자 2.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피해자 3. 관련

피해자 3.의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는 2018~2019년경 피해자 3.의 몸을 안는 등 스킨십을 한 적은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9년경 아침에 출근할 때 피해자 3.을 만나서 하이파이브라고 했더니 피해자 3.이 안한다고 하면서, 피조사자에게 그거는 성희롱인가 성폭력이라고 해서 피조사자가 이거는 성희롱(성폭력)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은 있으며,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이 아니라고 타일렀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상황 이후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는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그때도 피해자 3.이 맞았다고 해서 피조사자가 보건실로 가서 확인하자고 했고, ○○○ 보건교사가 외상은 없다고 확인해줬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3.의 학부모(父)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학교 ○학년(2018년) 또는 ○학년(2019년) 봄경, 피조사자가 학교 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해서 “때리지는 말아라” 라고 말했으며, 그때는 어디 끌고 가서 주먹으로 머리를 후려친 지는 몰랐는데, 혹 같은 게 나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확인했더니 괜찮아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진술한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조사자는 피해자 3.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나, 2019년경 피조사자와 피해자 3. 사이에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여, 피조사자가 피해자 3.을 데리고 보건실을 가고, 피해자 3.의 학부모에게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3.과 피해자 3.의 학부모가 2019년경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조사자가 피해자 3.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4) 피해자 4. 관련

피해자 4.는 2021. 3. 26.(금) ○○시간에 팀을 구성하면서 ○○이 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피조사자가 ○○○ 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고 본인을 강당 구석(배드민턴 라켓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이크 끄고 한 번만 더 예의없게 행동하면 죽어버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피해자 4.와 ○○○가 싸웠는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4.에게 "한번만 더 예의없게 행동하면 죽어버린다"고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 1. 진술과 학생 면담 녹취, 교감 면담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4.의 피해 내용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조사자는 피해자 2. 관련 진술에서도 "수업 중 학생을 따로 부르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강당 구석으로 데리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배드민턴 라켓을 두는 공간 근처에서 피해자 1.을 한 번 부른 적이 있기는 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피조사자는 피해자 1., 피해자 2., 피해자 3.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4.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결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32조도 ‘학교에서 체벌의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조사자는 2018년경 ○○○○학교 ○학년인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체벌과 폭언을 하였고, 피해 학생들이 ○학년이 된 상황에서도 폭언, 협박 행위를 지속하였다. 여기에 더해 2021년, 피해자 1.에게 체벌행위를 하고, 피해자 4.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볼 때, 피조사자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 폭언 등의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가 피해 학생들을 폭언으로 협박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은 학생인권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피해가 ○○○○학교 ○학년 부터 발생하여 2021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피해 학생들이 모의한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하는 등,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고, 위 인정사실 8) 과 같이 학교관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지시를 불이행하여 피해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더욱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여러 해 동안 지속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학교관리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학생들의 피해가 거듭 발생하고 지속된 점과 피조사

자가 학교관리자의 가피해자 분리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학교관리자로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살펴보면, 학교관리자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학교관리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1. 6. 18.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